

공 고

●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-8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·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(전파사용료 체납)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7일

전주전파관리소장

<전파법령 위반(전파사용료 체납)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>

1. 근 거 법 령: 전파법 제67조(전파사용료),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제2항제8호
2. 법령위반사항: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
3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
4. 청 문 일 시: 2024. 3. 6.(수) 09:30
5. 청 문 장 소: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
6. 대상 무선국: 14개 시설자(24국)

시설자명	허가번호	호출명칭	주 소	처분예정 내용
씨제○건설(주) 대표이사	94-2012-71-0000092	씨제○장수108호	서울 강동구 천호대로	신고폐지
유한회사 모○산업	94-2018-71-0000479~484(6국)	모○전주501~506호	전북 남원시 보절면	신고폐지
공○단	42-2013-70-0000034	700만○호	전북 군산시 옥도면	허가취소
윤○두	94-2019-70-0000221	○두남원501	전북 남원시 의총로	허가취소
형○혜	42-2014-70-0000014	701도○1호	전북 군산시 구암로	허가취소
라○성	94-2015-71-0001848~1850(3국) 94-2016-71-0000596 (총 4국)	○성정읍501~504	전북 정읍시 하북동	신고폐지
홍○호	42-2016-70-0000115	701협○호	전북 군산시 번영로	허가취소
○승	42-2015-70-0000026	702남○호	전북 진안군 진안읍	허가취소
김○남	94-2020-71-0001261~1263(3국)	○남전주501~503	전주시 덕진구 와룡로	신고폐지
박○용	41-2021-70-0000016	702○크	전북 익산시 무왕로	허가취소
유○식	42-2016-70-0000128	702세○호	전북 군산시 신촌남길	허가취소
구○례	42-2019-70-0000125	703광○호	전북 부안군 계화면	허가취소
김○례	42-2017-70-0000070	700홍○호	전북 군산시 옥도면	허가취소
박○자	42-2019-70-0000017	702황○호	전북 군산시 요죽길	허가취소

<유 의 사 항>

1. 귀 하(사)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.
2.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(우편 또는 FAX 포함)하여야 합니다.
3.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(무선국 허가취소, 신고폐지) 하게 됩니다.
4. 만약, 위 청문일(2024.3.6.)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5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(☎063-260-0021, FAX 063-260-0007)